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
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 정 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의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농림어업 자영업자 임의가입 요건 완화(안 제56조의18)

비법인 농림어업 4인 이하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근로자 임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

나. 관계 기관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(안 제54의2제1항)

자영업자 폐업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의2제1항제20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」에 따른 농어업경영체
등록·말소 등 농어업경영정보

제56조의18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가목 중
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를 “제2호 및 제3호”로 한다.

다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
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4조의2(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)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“근로소득자료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		제54조의2(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) ①	-----	

1. ~ 19의14. (생략)		1. ~ 19의14. (현행과 같음)		
20. 그 밖에 보험관계의 성립·소멸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		20. -----		
가. ~ 라. (생략)	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	<u>마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</u>		
		<u>지원에 관한 법」에 따른</u>		
		<u>농어업경영체 등록·말소</u>		
		<u>등 농어업경영정보</u>		
②·③ (생략)	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
제56조의18(가입대상 자영업자)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”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.		제56조의18(가입대상 자영업자) -		

1.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		1. -----		
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에 해당할 것 가.·나. (생 략) <u><신 설></u>	-----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「<u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
2. (생 략)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 할 것 가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해당하는 사업 나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가. ----- ----- <u>제2호 및 제3호</u> ----- 나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373